

# '94 축산 시책 방향(양계)

— 농림수산부 —

## 〈기본방향〉

- 생산성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
  - 축산전업농의 본격 육성
  - 축사시설의 자동화
  - 생산·기공·유통의 통합경영을 위한 계열화
  - 부업규모 농가들의 협업화
  - 시양기술 및 가축개량을 위한 기술혁신
- 품질고급화 및 유통혁신
  - 한우품질고급화로 시장 차별화 : 전문점육성, 브랜드화 및 홍보강화
  - 도축시설의 규모화, 자동화
  - 육류도체등급제 및 차등가격제 실시 확대
- 위생 및 검역기능 강화
  - 잔류물질 검사 확대 및 강화
  - 수입개방 대비 검역강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('92~'96년)
  - 축산 오·폐수처리 및 자원화
- 축산사업 추진체계의 개선
  -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양축가대표의 참여확대
  - 사업별, 부문별 지원방식에서 지원대상자별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
  - 전문생산자의 조직화로 생산이외 부가가치의 농민소득화

## 축정과 소관

### 1. 양축자금 지원

#### 가. 사업의 목적

- 양축가에게 저리의 양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양축가의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

#### 나. 사업내용과 지원조건

##### (1) 자금의 용도

-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,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단기지원

##### (2) 지원조건

- 지원대상 :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양축농가
- 호당 지원한도 : 300만원 이내
- 대출기간
  -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함
  -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
- 금리 및 이자징수
  - 금리 : 년 5%
  - 이자징수 : 원금상환일에 후취

## 다. 지원절차

### (1) 일반 양축자금

◦ 지원대상자 추천

— 양축자금을 응자받고자 하는 양축가는 응자 추천신청서를 작성, 관할축산계장(또는 축협조합 대의원)에게 신청

— 축산계장은 축협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배정액 범위안에서 양축가별 양축규모와 자금사정, 그동안의 양축자금지원 여부 등을 감안 「응자협의회」에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하고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하여대출 조합에 제출

— 「응자협의회」는 축협조합장이 각 구역별로 위촉하는 축산계장(또는 대의원), 읍·면·동의 축산 담당공무원 1명, 축산 후계자 대표 1명, 일반양축가 대표 2명으로 구성

— 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축협 조합 대의원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구별로 위 요령에 의거 대의원이 추천

◦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개

—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이 「응자협의회」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대출

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추천자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.

◦ 대출금의 지급

— 대출금은 출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체하지 못하며,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.

— 양축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방지하고, 현금 소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하고, 자금 필요시 인출 사용토록 장려

— 대축금을 지급한 때에는 응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.

◦ 지원계획 등 홍보

—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양축자금 배정액, 지원기준,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계획을 관내 시·군

· 구·읍·면·동사무 등에 통보하고 이를 양축농가에게 홍보하여야 함.

### (2) 특수목적 양축자금(50억원)

◦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가축사양비, 시설복구비, 자축 구입비 등에 지원하되 사유 미발생시는 축협중앙회장이 일반양축자금으로 전용지원할 수 있음.

◦ 지원기준은 별도 시달하는 요령에 의함.

## 라. '94 지원규모(조달 및 운용규모)

(단위 : 억 원)

구 分		'93(A)	'94(B)	증감(B-A)
조 달	재 정 자 금	800	1,208	408
	한 은 차 입 금	1,040	832	△208
	축 협 자 금	1,560	1,960	400
계		3,400	4,000	600
운 용	일 반 양 축 자 금	3,350	3,950	600
	특 수 양 축 자 금	50	50	—

## 2. '94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농가 등 해외연수계획

### 가. 목적

◦ 전문 축산농가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양축의욕 고취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

◦ 선진 농업국의 축산기술 도입·활용으로 생산비 절감

◦ 전업축산농의 육성과 축산업구조조정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

## 나. 분야별 연수대상국 및 계획인원

분야별	연 수 대상국	연 수 계획인원	연 수 시 기	연 수 기 간	연수대상자
육 우 낙 농 양 돈	일 본	46명(2개반)	7, 8월	10일간	한 우 사 육 농 가
	카나다	23 (1)	7	10	낙 농 농 가
	덴마크, 네덜란드	23 (1)	8	10	양 돈 사 육 농 가
육 계 산란계	미 국	18 (1)	9	10	육 계 사 육 농 가
	일 본	18 (1)	10	10	산란계사육농가
유 품	일 본, 덴마크	23 (1)	10	10	유 통 종 사 자
계		151 (7)			

\* 대상국 및 연수시기는 현지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가능.

### 3. 재해대책

#### 가. 사업의 목적

- 재해예방을 사전준비 철저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
-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지원대책의 신속한 피해 최소화

#### 나.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

(1) 지원근거 :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

(2) 지원대상 : 중앙재해대책본부(풍수해대책법) 및 농림수산부(농어업재해대책법)에서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양축농가

\* 중앙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양축농가는 자력복구 실시(지방비 지원포함)

#### (3) 재해복구비용 재원확보 방침

◦ 국고보조금 : 정부예비비 또는 농림수산부 기정예산에서 전·이용

◦ 응자금

재원별	비 목	금리	융자기간		비 고
			거치	상환	
농특회계	재 해 대책비	5%	3년	7년	◦ 축사기자재 등 구조 개선성 복구비 ◦ 가축·초지 등 복구비
축발기금	예비비	5	3	7	

- 다만, 응자금재원 형편에 따라 재원이 변경될 수 있음

- 채권보전은 축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함

#### (4)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

구 分	조 건	부 담 을			비고
		국고보조	융자	자담	
축 사		%			
- 대규모시설 (400㎡이상)	당해년도 건조가격	-	50	50	
- 중·소규모시설	"	20	60	20	
총 지	"	-	50	50	

기축(유실·폐사)	어린가축 입식비	20	60	20	
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	----	----	--

\* 축사·초지의 경우 『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』 제 17조에 의거 피해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이외의 시설물이거나 허가 및 면허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

#### (5)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

◦ 『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』 제 21조에 의거 50% 이상 피해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2년간)

◦ 피해농가 양축자금 대출액은 시장·군수가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

#### 다.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요령

##### (1) 기축 및 축사관리

- 축사주위, 방목장, 분뇨처리 등 배수로 정비
-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
- 비상사료를 10일분이상 비축
- 가마니, 마대, 새끼 등 준비
- 홍수, 폭설 등에 의한 위험예상 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 강구

##### (2) 기축방역 및 위생관리

- 긴급방역비 확보로 소독약, 예방약 등 방역약품 사전 비축
- 소독기 등 방역장비 사전점검
- 공수의 등 동원체계 점검
- 폐사축은 신속히 소각 또는 매몰
- 침수지역은 축사 등에 대한 소독실시
- 가축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

##### (3)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

- 침수, 유실, 매몰 등 피해예상 지역은 배수로 정비
-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, 장비, 사업비등의 신속한 지원
-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종자 알선 및 파종지도
- (4) 재해양축농가에 대한 지원 우선 등
- 재해발생시 시·도지사는 피해 양축농가가 출

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도축(도계), 판매, 검사, 계류, 정산 등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 협조

◦ 재해발생시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대상 이외의 재해양축가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축협에 양축자금 또는 축협일반자금 우선지원 협조 요청

◦ 지원요청을 받은 축협조합장은 타농기에 우선하여 지원

### (5) 기타 행정사항

◦ 피해복구 및 사후관리는 시·도지사 감독하에 관할시장·군수 주관으로 실시

◦ 시·도지사는 피해복구 원료와 동시에 별첨 양식에 의거 정산보고

◦ 기타 필요한 사항은 풍수해대책법, 농어업재해 대책법,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제규정에 의거 추진

◦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사진촬영하여 복구지원 시 활용

◦ 시·도지사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양축농가들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여 관내 양축농가에 지도

## 라. 재해 양축농가에 대한 특별지원

### (1) 사업의 목적

◦ 피해내용이 극심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 계획만으로 충분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양축자금을 특별지원하여 재해양축농가의 자금지원해소 등 재활기반 구축

### (2) 지원의 내용과 지원조건

#### ◦ 지원대상

- 재해내용이 극심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

- 피해내용 중 가축이 유실 또는 폐사한 경우로서 호당지원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양축농가

- 지원대상가축: 소, 말, 양, 돼지,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, 가금

#### ◦ 재원: '94 양축자금중에서 지원

#### ◦ 지원기준

- 호당지원액: 피해당시 조사된 기축피해액-정부지원액(국고+융자금)

- 호당지원한도(현행 800만원)를 초과 지원할 수 있으며 호당 10만원 미만은 제외

#### ◦ 융자조건

- 금리: 년 5%

## 축산경영과 소관

### 〈기본방침〉

◦ 전업양축농가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확립

- 기반조성, 축사, 자동화시설 분뇨처리 등 종합지원으로 생산비 절감

◦ 축산단지, 협업조직화, 가축계열화 등 생산구조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

- 축산입지확보, 부업농의 조직화로 규모화 및 생산·가공·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생산성 극대화

◦ 기타 가축의 생산 및 유통, 축산기자재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원으로 구조개선조기완료

### 전업농육성 및 생산비 절감목표

구 분		'93	'97	2001
전업농 육 성	한우	농 가 수 (두수비율/ 농가비율)  (12.6/1.0)	5,430호 %  (30.0/4.0)	12,000  (60.0/12.0)
	젖소	농 가 수 (두수비율/ 농가비율)  (36.1/16.0)	4,500  (50.0/33.0)	6,500  (75.0/60.0)
	돼지	농 가 수 (두수비율/ 농가비율)  (47.7/3.6)	2,560  (70.0/13.0)	4,000  (80.0/33.0)
	닭	농 가 수 (두수비율/ 농가비율)  (49.5/0.6)	1,080  (70.0/1.7)	1,800  (80.0/3.2)

생산비 절감	한 우(400kg)	2,230천원	1,700	1,280
	우 유(1kg)	428 원	335	264
	돼 지(90kg)	124천 원	103	97
	산란계(10개)	513 원	435	415
	육 계(1kg)	983 원	830	765

※ 전업규모 : 한우번식 30두 · 비육 100두, 젖소 30두, 돼지 500두, 닭 2만수 이상 규모를 말함.

## 1. 닭 경쟁력제고사업

### 가. 사업의 목적

◦ 양계농가가 경영의 규모화, 자동화와 환경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

### 나.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

◦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의 모든 사업을 종합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

—기반시설, 축사시설, 급이·급수시설, 환경제어 시설, 부화시설, 계분처리 장비 및 시설 등 관리기계·기구

—다만, 부지 및 가축사육비, 경영비는 제외됨

◦ 사업기간 : '94.12말까지(1년)

◦ 사업비 지원조건

—간이축사 설치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—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다한 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기자원금(융자잔액기준)을 포함하여 개인은 1인당 2억원, 법인은 자본의 200%,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% 한도내에서 지원함

단, 종축생산시설(종계장, 부화장)은 사업규모, 능력 등을 감안 사업비 증액 지원가능

◦ 융자조건

—재 원 :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, 축산발전 기금

—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균분 상환(금리 3~5 %)

—지원비율 : 70% 융자, 30% 자담(별첨 지원

기준 참조)

### 다. 사업 대상자

◦ 대상자

—닭(육계, 산란계)을 사육하는 농가 또는 종계장 및 부화장 경영자

—영농조합법인, 축협, 자생적인 협업체 등

◦ 대상자 구비요건 및 우선순위

〈전업농, 종계장 및 부화장〉

—3년이상 양계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

—농과계 졸업생 또는 후계자는 1년이상 닭을 사육한 경험이 있는 자

—종계장 및 부화장은 시·도지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

—대상자중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할 사항

• 자금지원 받은 후 2년이내에 3만수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자담 능력이 있는 농가

• 계열화사업 또는 수출용 닭고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자

• 현장훈련 실시, 시범농장으로 개방 등 다른 양계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

•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

〈축협, 법인 협업체 등〉

—축협, 영농조합법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법인

—양계사업을 목적으로 5인이상의 농가가 회칙(규정 등)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협업체

—다음의 경우에 우선지원

• 공동구매, 공동출하, 공동방역 등 조직의 응집력이 좋은 협업체

• 공해문제 등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입지에 설치코자 하는 조직

•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(경영일지기록, 전산화 등)를 도모하는 조직

※ 조합, 법인, 협업체 등 조직의 구성농가는 개별 농가에 우선하여 지원 가능

## 라. '94 지원계획

구 분	축발기금	농특회계	계
경 기	백 만원 4,402	1,528	5,930
강 원	2,935	1,019	3,954
충 북	1,957	679	2,636
충 남	4,076	1,415	5,491
전 북	2,446	849	3,295
전 남	4,631	1,607	6,238
경 북	6,522	2,264	8,786
경 남	4,761	1,653	6,414
제 주	880	306	1,186
계	32,610	11,320	43,930

\* 농특회계의 용자종결기한 : '95. 3.31까지

## 마. 대상자 선정방법

◦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관할 시·군에 사업계획서 제출

◦ 시장, 군수는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, 인·허가 등 적법성 등을 검토후 사업계획서를 농어촌발전 심의회 및 축산분과위에 상정

◦ 농어촌발전 심의회 및 축산분과위는 사업별, 대상자별 우선 순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되, 닭사육농가 대표가 2/3이상 참여하는 축종별 실무협의회가 실질심사, 선정

## 바. 사업추진 유의사항

◦ 사업계획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사업만 인정하여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되, 인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설,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한다.

– 돈사시설의 적정면적 산출은 “축사표준설계도서”를 기준으로 산출

– 관리사, 창고, 기반시설 등은 축사시설비에 포함하여 지원

– 축산폐수 및 축산공해 시설, 장비지원사업은 『축산공해방지시설계획』에 의거 지원

–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'93.12월 기 시달한 '94 축산발전사업계획 참조

## 사. 사업비지원

◦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는 축사시설개선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음

– 분뇨처리시설, 장비구입자금과 축사시설개선 자금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용

– 농특회계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으로 추가 지원

◦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10% 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액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지원

◦ 사업비는 사업별 지원기준에 명시된 지원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
◦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담보, 제3자담보,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## 2. 축산단지조성사업

### 가. 사업의 목적

◦ 사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, 생산물의 공동판매, 공동방역 등 협업체제의 구축, 폐수처리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, 관리노력의 분담 및 시설의 효율적 배치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

### 나.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

◦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집단사육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,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임. 다만, 부지 및 가축 구입비,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간이 축사 설치시에도 제외됨.

#### ◦ 지원조건

– 사육기반시설과 조사료생산시설·장비는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함

– 사육기반시설중 진입로개설, 목도개설, 용수개발과 조사료생산장비구입비 및 분뇨 운반장비 구입비는 단지의 공동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일 경우

## 보조비율중 20%를 응자전환함

—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다한 투자의 방지를 위하여 개인은 1인당 3억원, 법인은 자본금의 200% (법인소속 개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),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% 한도내에서 지원함

—지원은 축종별 지원기준(개인 및 공동)에 의함.

• 단, 기반조성사업중 진입로개설과 전력인입은 단지규모 10ha(돼지 15천두, 닭 150천수사육기준)당 한우·젖소는 0.5km 닭·돼지의 경우 1km(단지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지원 가능), 용수개발은 1개공을 한우·젖소의 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라, 분뇨처리시설 “축사공해방지시설 지원기준”에 준하여 지원

◦ 응자조건

—재 원 : 축산발전기금

—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균분상환(금리3~5%)

## 다. 사업대상자 및 구비요건

◦ 대상축종 : 한우, 젖소, 돼지, 닭

◦ 대상자

—부지를 확보하고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  
—기 조성된 단지중 규모확대 등 사업변경으로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지

—기존 집단사육 지역을 단지화 하고자 하는 농가

◦ 대상자 구비요건

—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로 단지를 구성

—단지규모는 한우·젖소 3호이상, 돼지·닭은 5호이상이 참여토록하고, 호당규모는 가급적 전업규모 이상일 것

—단지의 구성원중에는 과거 5년간 동일 축종을 전업규모 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가 있을 것

—다음의 단지에 우선지원

◦ 축종별로 사육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(한우와 젖소는 사육장 및 조사료생산 기반규모가 크고 용수개발 등의 경비가 적게드는 곳, 양돈·양계단지는 분뇨처리 등 공해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

로 예상되는 단지 등)

◦ 지분이 평등한 단지

◦ 지방비를 많이 확보한 단지

◦ 단지 구성원의 호당 사육규모가 전업규모 이상인 단지

◦ 구성원의 응집력이 좋은 단지(법인 또는 협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지, 공동구매·출하, 공해방지시설의 공동설치 등의 정관, 회칙, 운영규정을 정한 단지 등)

◦ 신규단지, 현재조성중에 있는 기존의 단지, 기존집단사육 지역단지 순으로 지원

## 라. '94 지원계획

◦ 지원사업비 : 45,585백만원('93년도 2년차 응자 및 '94 신규조성단지사업비)

—'93 축산단지 2년차 소요분 배정계획

단위 : 백만원

구 분	'93 선 정 단 지				비 고
	사업량	기지원액	'94지원	계	
경 기	3	2,100	2,100	4,200	양평, 이천, 용인
강 원	—	—	—	—	—
충 북	1	700	700	1,400	옥천
충 남	2	1,400	1,400	2,800	논산, 당진
전 북	3	2,100	2,100	4,200	정읍, 옥구, 완주
전 남	5	3,500	3,400	6,900	화순, 무안, 영암, 함평, 해남
경 북	3	2,100	2,100	4,200	선산, 영풍, 금릉
경 남	3	2,100	2,100	4,200	양산, 합성, 함안
제 주	3	2,100	2,100	4,200	부제주(3)
계	23	16,100	16,000	32,100	

※ 1. 전남도 해남, 북일 낙농단지는 총 13억원중 '94년도에 6억원 지원

2. 재원 : 축산발전기금(기지원액중 지방비 지원은 제외된 금액임)

◦ '93년도 2년차사업분(23개소)은 개소당 7억원을 기준으로 응자지원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기존단지의 경우는 추가 사업계획(당초계획대비)

의 타당성 검토 후 '93년도 사업 및 '94신규단지 사업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조정지원 할 계획임

◦ '94년도 신규단지의 보조, 융자사업비는 대상자 선정후 단지별로 확정코자함

◦ 1년차 : 보조지원 해당액(지방비는 자체화보)과 융자소요액의 일부지원(예산범위 내에서 축종별로 일정액지원)

◦ 2년차 : 융자 총 소요액중 1년차 지원 잔액지원

## 마. 대상자 선정방법

◦ 사업희망자는 시·군에 사업계획서 제출

◦ 시·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, 인·허가 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농발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에 상정

◦ 농발심의회는 지원요청 단지의 민원발생여부, 공해방지시설설치, 구성원응집력, 대표자의 지도력, 단지의 사업성,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심사

◦ 시·군은 농발시의회에서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지의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

◦ 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추진가능한 단지의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

◦ -지방비 부담계획이 첨부되어야 함

## 바. 사업추진 유의사항

### (1) 기반시설

◦ -진입도로, 전기인입 및 용수개발 등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기금 지원

### (2) 사육시설

◦ 사업계획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계획만 인정하여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되, 인력절감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자동화 시설,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한다.

◦ -축사시설은 용도별 사육두수등을 감안 적정 면적을 검토하고 사료창고등은 축사시설비에 포함 지원

◦ -축사부지 정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사시설 사업비로 지원가능하나 과다한 경우는 적정 면적

으로 조정 인정

### (3) 조사료생산기반(한우, 젖소)

◦ 한우 및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 참조

### (4) 분뇨처리시설

◦ 분뇨처리시설(장비, 건물 등)은 가축사육두수(수수), 축분 발생량 등을 감안 적정 수준으로 지원(축산공해방지시설계획 참조)

### (5) 기계, 기구, 장비

◦ 분뇨처리 및 조사료생산용 트랙터, 소독장비 등 단지내 양축전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기계, 기구, 장비 구입비 지원 가능

## 사. 사업비지원

◦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10% 범위내에서 사업 착수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액은 사업진척도에 따라 지원

◦ 사업비는 사업별 지원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
◦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담보, 제3자담보,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제도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◦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축산발전기금 집행은 시장·군수의 사업추진실적(기성고) 확인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관리 한다

◦ '93년도 선정단지의 경우는 우선 단지당 7억 원씩(해남 낙농단지 6억원) 지원하니 축협중앙회장은 자금 배정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고

◦ 기존단지중 사업확대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에서 기 융자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단, 예상범위 내에서 조정지원 계획임

◦ 기존 집단사육지역을 단지화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, 주민과의 마찰해소 등을 감안하고 지원사업비 집행시 증빙자료 기록유지 등으로 자금이 전·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

◦ -사업전·후 변동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

### 3. 가축계열화 사업

#### 가. 사업의 목적

○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어린가축, 사료 등 생산원자재와 사양기술을 제공하고 생산물을 수집·가공·판매하는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

#### 나. 지원내용

○ 생산에서 가공·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가능

— 시설예시 : 도축시설, 가축사육, 가공, 냉동, 판매 등 관련시설

\* 다만, 부지 및 가축구입비, 경영비는 제외

○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비 중에서 일반농가에 비해 우선 지원토록함

#### 다. 지원대상자

○ 대상자

— 신규로 계열화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단체(조합, 자율조직) 등

— 기존 계열화사업자중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

○ 대상자 구비요건

— 계열주체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자체 확보하거나, 임차계약 또는 계열화에 참여시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

— 투자계획상의 자담분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자

○ 자담분 : 계열화이후 신규투자액의 일정율 (기 투자분 제외)

— 사업지원 우선 순위

○ 계약생산된 축산물의 가공·유통능력이 우수한 사업자

○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체계를 갖춘 사업자

○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

#### 라. '94 지원계획

○ '94 예산액 : 280억 원(돼지·닭 : 농발기금 175, 한우 : 105)

—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 예산액 조정 예정

— 계열화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시설비의 70% 용자 지원

○ 재원 :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(돼지, 닭) 및 축발기금(한우)

— 지원조건 : 계열주체에 따라 지원조건 차등화

— 생산자단체주도 계열화사업자 : 3년거치 7년균 분상환, 년리 5%

— 민간기업 주도 계열화사업자 : 3년거치 7년균 분상환, 년리 8%

#### 마. 사업신청 절차

○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계열농가 확보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균수를 경유 도지사에 신청

○ 도지사는 계열화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지도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신청

#### 바. 대상자선정

○ 농림수산부는 신청된 사업계획 검토후 대상자 확정

— 사업자당 지원액은 사업계획 검토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

#### 사. 사업추진 유의사항

○ 계열화사업 대상가축 및 사업규모

— 대상가축 : 한우, 돼지, 닭(산란계, 육계)

— 규모 : 사업 승인후 5년이내에 한우 3천두 이상, 돼지 3만두이상, 닭 100만수 이상 규모로 계열조직화

○ 계열화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자재는 계열주체가 직접 확보하거나 기존시설을 장기임차

또는 계열조직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

—기반시설 : 도축장, 종축 생산시설, 가공시설, 판매시설 등

—자재 : 사료, 어린가축(병아리, 자돈, 송아지 등), 약품 등

◦ 농특회계 자금은 당해년도내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

—단, 융자금의 융자종결기한은 '95. 3.31일까지

#### 아. 사업비지원

◦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소요자금의 10% 범위 내에서 사업착수 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지원

—예산 집행은 농특회계 집행에 관한 제규정 및 축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함

◦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, 제3자 담보,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사업자 편의을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

### 4. 축산기계화사업

#### 가. 사업의 목적

◦ 축산경영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계·기구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#### 나.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

◦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축산용 기계·기구 구입비 지원

—가축사육에 필요한 축산전용 기계·기구

—기계·기구 품목선정은 농가스스로 선택

◦ 사업비 지원조건 : 70% 융자, 30% 자부담으로 추진

—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다른 사업에 의한 같은 품목의 중복지원 불가

—융자조건 : 2년거치 3년상환, 연리 5%

#### 다. 사업대상자 및 구비조건

◦ 대상자 : 전업농가, 전업농 지향농가

◦ 대상가축 : 축산법에서 규정한 전가축

◦ 대상자구비조건

—전업농 또는 가족노동력 위주의 전업농을 지향하는 농가

—다음의 농가에 우선

• 사업체종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한 기계, 기구를 구입코자하는 농가

• 수출용 축산물생산에 참여하고 있는자

• 현장훈련실시 및 축산관련 교육이수자

•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을 기할 수 있는자

#### 라. '94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계
농특회계	3,934	820	1,100	3,424	1,724	2,728	3,194	2,796	280	20,000

\* 융자금의 융자종결기한 : '95. 3.31일까지

#### 마. 대상자 선정방법

◦ 분기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사업희망자는 시·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(지원받고자 하는 시기 명시)

◦ 농발심의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

—분기별대상자 선정결과 보고

◦ 분기별 자금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순위 농가는 다음 분기로 순연됨

◦ 당해 분기에 기계·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다음 순위 농가에게 지원이 승계됨

◦ 분기별사업자금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보고

## 바. 사업추진 유의사항

### (1) 자동화시설

—사업계획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규모만 인정하여 과다한 투자를 억제하되, 인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고려하여 자동급이·급수기, 환기, 선란 등 자동화 시설,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지원

### (2) 기계, 기구

—사육축종의 전문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착유기, 냉각기, 베일러 등 축산전용기계, 기구의 구입비로만 지원가능(단, 차량은 제외)

## 사. 사업비지원

◦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는 '94지원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음

◦융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담보, 제3자 담보,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◦사업비는 농특회계 관리체규정 및 축협여신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한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의 사업추진실적(기성고) 확인결과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관리 한다.

## 5.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

### 가. 사업의 목적

◦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기축사육 및 축산물 생산의 기초가 되는 축산기자재의 품질향상으로 축산업 구조개선의 조기달성을

### 나. 사업내용과 지원조건

◦축산전용 기자재 생산을 위한 기계·시설 등 자금지원

◦자동 급이·급수장치, 착유기 등 파이프라인, 자동환기 장치, 자동케이지 시스템, 축분처리기, 기타전문기자재 생산용 기계 및 시설

◦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수생산업체에 대해 동설비자금의 70% 융자, 30% 자부담

◦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8%

## 다. 사업대상자 및 선정기준

◦대상자 : 축산기자재 생산업체

◦대상자 구비조건

—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

—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을것

◦대상자 선정 우선순위

—수입기자재와 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

—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

—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/S가 양호한 업체

## 라. '94지원계획

구 분	사 업 량	축 발 기 금
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	10개소	2,100백만원

—재원 : 축산발전기금(개소당 210백만원 기준)

### 마. 대상자 선정방법

◦사업희망자는 (사)한국축산기자재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것

◦축산기자재협회는 회원,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정해 농림수산부에 보고

◦농림수산부에서는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

## 바. 사업추진 유의사항

◦표준축사 설계도에 적합한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

◦부지구입 및 운영비로는 자금사용 불가

◦가급적 기존 공장을 활용토록하고 자동화설비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공장신축 및 증·개축으로도 자금사용가능

◦새로운 기자재를 개발코자하는 경우는 표준축사설계도 및 현장 여건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발 할 것

## 사. 사업비지원

-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10% 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사용  
-나머지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별도 지원
- 사업비는 축산전용 기자재생산을 위한 기계시설 등 소요자금의 70% 융자지원 30%는 자부담
-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사업 명목으로 사용불가
- 융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 담보, 제3자담보,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담보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축산발전기금의 지원은 예산 회계법과 보조금의 여신관리에 관한 법률, 축협의 여신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

## 6. 축산경영진단사업

### 가. 목적

- 양축농가별 경영관리 및 수익성 분석 등으로 경영지표 설정
- 경영지표에 의한 경영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 절감

### 나. 추진방향

- 양축농가의 경영진단과 생산비 분석, 지도에 의한 농가경영 개선 유도
-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지도계획수립 추진
- 자동화시설, 분뇨처리시설 등 부분별 우수성공 사례를 발굴 농가교육 자료로 활용
- 농가별 일기록 중심지도에서 점차 전산화 운영 중심체계로 전환 유도
- 정부의 축산업구조개선 사업의 실용성 거양을 위한 대농가 상담 및 전문지도

### 다.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축협중앙회장
- 사업기관 : 도 및 생산자단체(축협, 한국낙농육

우협회, 대한양돈협회, 대한양계협회)

- 대상축종 : 비육우, 번식우, 젖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(6종)

- 사업기간 : '94. 1.1 ~ '94.12.31(1년간)

- 사업비 : 181백만원

-사업비용도 : 경영진단 일자제작, 교육 및 교재 대, 협의회비, 지도여비 등

-도 및 생산자단체(낙농육우, 양돈·양계협회)

경영진단사업추진 및 협의회 운영비는 개소당 10백만원을 기준하되 사업자의 계획에 의거 축협중앙회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증감조정 지원 가능

-재 원 : 축산발전기금

## 〈가축개량〉

### 〈기본방향〉

- 기축의 유전능력 향상을 통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
- 능력검정 확대 및 내실화
- 국내외 우수 유전자원의 최대 활용
-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
- 가축개량총괄업무는 총괄기관 조직 정비시까지 농림수산부에서 담당

### 〈산란계〉

대상형질	1992	1997	2001	년간개량량
성계생존율(%)	90	91	92이상	0.2
조산일령(일)	158	156	155	△0.3
산란율(%)	77	80	82	0.6
산란지수(개)	269	278	285	1.8
평균 난중(g)	62	62	62	0.00
사료 요구율	2.52	2.41	2.30	△0.02
체중(g)	1,927~2,306	1,864~2,253	1,800~2,200	△14.1~11.8

※ 체중 : 앞부분 백색계, 뒷부분 갈색계

### 〈육용계〉

대상형질	1992	1997	2001	년간개량량
육성율(%)	96	97	98이상	0.02
6주체중(g)	1,720	1,910	2,100	42

7주 평균(g)	2,150	2,325	2,500	39
사료요구율(6주)	2.01	1.91	1.80	△0.02

## 7. 닭 능력검정 사업

### 가. 목적

- 종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
-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선택자료 제공
-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### 나. 기본방침

- 검정요원의 전문화
- 검정방법의 공정화
- 검정결과의 공표
-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장비의 자동화

### 다.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대한양계협회
- 대상 :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
- 사업기간 : '66~영구
- 사업량

검정소검정		일반검정	
15천수(산란 3, 육용 12)		도입 및 국내분양 종계	

- 지원내역

구분	사업량	단위	보조			융자 (축발 기금)	자담	합계
			국비	지방비	축발기금			
사료비 시설및 장비					백만원 50	50		
계					543	543		
					593	593		

### 라. 세부실시요령

#### (1) 검정요령

- 닭 능력검정요령(농림수산부 고시 제87-42

호 '87. 8.21)에 의함

#### (2) 닭 검정위원회 운영

- 검정관의 선발 및 배치
- 검정기록의 분석 평가
-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

#### (3) 검정성적 공표 등

- 신계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수입여부 결정
- 검정소 검정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
- 일반검정결과는 신청자 및 시도(시군)에 통보하여 종계장관리에 협조

#### (4) 검정시설 현대화 및 장비 자동화

- 설계, 입찰, 정지 등 조속한 공사착수로 '94년 내 완료
-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실적 및 공정에 따라 자금지원

#### (5) 보고 및 감독

- '94 닭 능력검정 세부계획 보고('94. 3.10까지) : 대한양계협회
- 사업추진실적보고(매분기 악월 20일까지) : 대한양계협회
- 대한양계협회장은 각종 보고서 관련도지사에게도 보고
- 경기도지사는 년2회 이상 관련사업 현지 확인 점검

## 8.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

### 가. 목적

-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
-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전

### 나. 기본방침

-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
- 생산자단체,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가시화

- 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

#### **다. 사업계획**

- 사업주체 : 대한양계협회
- 사업협조 : 국립종축원, 축산시험장, 가축위생연구소, 가금학회 및 재래닭 보조연구회 등
- 사업기간 : '94~'97

사업 내용	기간
재래닭의 유전적 생산능력 평가 및 가계조성	'94~'95
우량교배조합선발 및 사료급여기준 설정	'95~'96
실용계 사양관리체계 확립 및 육질평가기준 설정	'96~'97

- 지원내역
  - 사업비 : 108백만원
  - 용도 : 가축구입비, 시설비, 재료비, 인건비 등
  - 지원조건 : 축산발전기금 보조

#### **라. 세부실시요령**

- (1) 대한양계협회장은 사업협조기관과 협의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담

##### **(2) 시험축확보**

- 국내 연구기관,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계 확보

##### **(3) 사업비 지원**

- 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요구와 추진실적에 의거 자금 지원

##### **(4) 사업관리**

- 대한양계협회장이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지도, 감독

- 시험기간중 생산물을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

##### **(5) 보고 등**

- 년도별 사업세부추진계획 보고('94. 3.10 까지) : 대한양계협회장

- 사업추진실적보고(분기 익월 20일까지) : 대한양계협회장

## **9. 국산종계개발지원사업**

#### **가. 목적**

- 국제경쟁력 있는 국산종계개발 유지
- 외국 종계회사와의 영업경쟁으로 양계농가 부담경감

#### **나. 기본방침**

- 민간주도의 닭 육종활동 지원
- 용도별로 1계종 이상 국산종계 개발유지(산란용 1, 육용 1계종 이상)

#### **다. 사업계획**

- 사업주체 : 대한양계협회
- 대상 : 민간 닭 육종회사
- 사업기간 : '94-영구
- 사업량 : 1개소
- 지원내역
  - 사업비 : 7억원(융자)
  - 용도 : 축사, 장비 등
  - 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 균분상환, 년리 8%

#### **라. 세부실시요령**

##### **(1) 지원대상자 요건 및 선정**

- 닭 육종사업 분야만으로 독립회계가 이루어지는 법인체로서

- 용도별로 1계종 이상 국산종계를 개발, 유지하는 계획서를 당부에 제출하여

- 가축개량협의회에서 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된 업체를 선정

##### **(2) 지원업체 의무사항**

-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닭경제능력검정에 개발된 계종의 실용계를 매년 출품하여 외국계종과 능력을 비교하여야 함

- 자금지원 5년이내에 닭경제능력검정 출품계종 평균수익성(추생추 판매가격기준)의 90% 수준 이상 도달하여야 함

※ 의무사항 이행이 안될경우 지원자금 회수

### (3) 보고 등

◦ 국산종계개발 추진상황 보고(매분기) 의월 20일이내) : 대한양계협회장

## 축산물유통과 소관

### 1.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

#### 가. 축산물 수급조절 사업의 효율적 추진

##### (1) '94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 수급전망

구 분	수 요			공 급			차년 이월 (B-A)
	국내 소비	수출 (A)	계 이월	전년 생산 수입	국내 당년 수입	계 (B)	
돼지고기	647.9	14.0	661.9	3.9	650.9	(7.1)	661.9
닭 고 기	254.5	—	254.5	3.7	249.3	(1.5)	254.5
계 란	457.3	—	457.3	2.4	454.9	—	457.3

※ ( )내의 돼지고기, 닭고기의 수입량은 '93, '94년도 수입개방된 냉장육 수입예상량임

##### (2) 산지가격안정

-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사업조절을 위한 대농가 지도 강화
- 소비촉진 홍보강화
- 자율 수매비축·방출의 탄력적 운영

#### 나. 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

##### (1) 목적

◦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시책의 원활한 수행

◦ 적정가격 유지로 양계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자 보호

◦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기반 구축

##### (2) 기본방침

◦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매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

### (3) 사업계획

◦ 사업주체 : 농림수산부

◦ 사업대상 : 생산자단체(축협), 정부지정계열화업체, 한국냉장, 계육가공업체 등

◦ 사업기간 : '94. 1~12

◦ 사업비 : 축산물 수급조절자금 9,250백만원(축발기금)

◦ 지원계획

사 업 명	사업량	지원단가	사 업 비			
			보조	기금동자	지부담	계
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			백만원	9,250		9,250
육 계			원/수 백만원 15	5,800		5,800
계 란			원/개 백만개 300	3,450		3,450

◦ 융자조건 : 년리 3~5% (조합 3%), 융자일로부터 1년간

##### (4) 세부실적요령

주 전 요 령	주관(협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양계산물 자율 수매비축방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— 수매시기 : 양계산물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하여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수매비축 실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단, 산지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 우선 수매</li><li>— 수매품목 : 육계, 계란</li><li>— 수매장소 : 산지 또는 도계장</li><li>— 수매가격 : 산지가격이 경영비 수준에서 자율수매(양계산물 수매에 따른 손익은 수매주체에서 책임처리)</li></ul></li><li>◦ 사업대상자 선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— 사업대상자는 수매비축능력(비축 시설능력 등)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수매비축기능이 있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축보관능력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및 계열화업체는 농가와의 계약내용과 계열농가의 명단을 첨부하여 '93. 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추천</li></ul></li></ul></li></ul>	시·도

—농림수산부는 수매비축기능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량 및 자금 배정을 확정 시달	농림수산부	시·도
◦ 수매비축 의무 및 지도감독		
—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자율 수매비축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 및 가격안정 상 필요시 정부지시에 의거 의무비축 및 방출		
—시·도지사는 수매비축 확대를 위한 독려 및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자금 융자일로부터 별도 정하는 기간내에 비축실적이 80% 미달되는 대상자는 지원자금 잔액을 회수조치도록 하고 전배대상자를 선정하여 축협중앙회에 통보		
—축협중앙회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수매비축실적인 부진한 대상자의 지원자금 잔액을 회수하고 시·도지사가 선정한 전배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후 시·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	축협중앙회	시·도
◦ 자금관리 : 축협중앙회장		
—수매비축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금을 자체 수매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수매·판매실적도 별도로 관리	축협중앙회	시·도
◦ 수매비축실적 보고		
—사업대상자는 수매비축실적을 매주 시·도지사에게 보고		
—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별로 매월 일자별로 집계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축협중앙회에 통보		

### 원회

- 사업품목 : 돼지, 닭
- 사업기간 : '94. 1~12
- 사업비 : 축발기금사업비 200백만원(기금보조 200, 자담 400)
- 지원계획

사업명	보조			융자	자담	계
	국고	축발기금	소계			
축산업 자조금 지원	백만원	200	200		400	600
양 돈		100	100		200	300
양 계		100	100		200	300

- 지원조건 : 자조금 사업주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의 100분지 50범위내에서 보조

## 2.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
### 가. 계란집하장 설치

#### (1) 목적

-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
- 계란의 수급 조절에 의한 가격안정 도모
- 계란의 상품성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

#### (2) 기본방침

- 계란의 규격별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
- 생산농가의 공동출하에 의한 시장 교섭 능력 제고

◦ 계란 수집상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

- 비축사업 병행추진으로 수급조절 기능 강화

#### (3) 기본계획

- 사업주체 : 시·도 및 축협중앙회
- 대상 : 축협 및 산란계 계열화 시행 업체, 배합사료 제조업체
- 산란계계열화 업체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기존의 사육농가와 계약을 해야 하며 상시 사육수가 50만수 이상이어야 함
- 사업기간 : '94.1~12

### 다. 축산업자조금지원

#### (1) 목적

-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등을 통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

#### (2) 기본방침

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 보조

#### (3)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양돈협회·양계협회 자조금관리 위

### ◦ 사업규모 및 시설내역(개소당)

부지매입	건 물	차 량	선별기	계
700평	250	2대	1대	—
140백만원	275	20	365	800

※ 부지 및 시설규모, 사업비 등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자 형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

### ◦ 사업비 지원내역

사업량	단 가	사 업 비		
		계	용 자	자 담
2개소	800백만원	1,600 (100)	1,120 (70)	480 (30)

—재 원 : 축발기금

—융자조건

- 융자기간 : 3년거치 7년균분상환
- 금 리 : 3~5% (축협 3%)

### (4) 세부추진상황

추 진 요 령	주관(협조)
◦ 민간업체는 시·도지사가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	시·도
◦ 축협은 축협중앙회장이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	축협중앙회
◦ 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 서류	"
—사업계획서 및 년차별 수지계획서	
—민간업체는 사육농가와의 계약서 및 계약농가별 사육수수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	
◦ 자금집행 및 관리는 축협여신관리 규정에 의함	축협중앙회
◦ 보고	시·도, 축협중앙회
—대상자 추천보고 : '94. 3.31일 한	
—사업 추천 실적보고 : 매분기 익월 10일까지	
—사업완료 보고 : 완료후 10일 이내	

### 조지사료과 소관

## 1. 사료수급

### 가. 사료시책 추진방향

-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축산물의 경쟁력

제고

### 〈기본방향〉

- 사료원료수급 및 사료가격안정
- 사료산업의 경쟁력 제고
- 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전성 확보
-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및 성력화

### 나. 중점추진시책 내용

#### (1)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

- 사료용보리 수입 등 사료원료 수입의 다양화
- 사료관련 세제(관세 및 부가가치세) 개선 추진

#### (2) 사료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사료제조업의 허가제→등록제 전화
- 사료관리법 개정 : '93정기국회 제출 계류중
- 사료제조업체 시설자금 지원

#### (3) 사료품질관리 강화

- 사료검정기관의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
- 사료검사원의 기술교육
- 사료품질관리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실시

#### (4)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및 성력화 추진

- 초지조성(기성초지보완) 및 사료작물재배지원
-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등 기계화촉진
- 벚꽃 등 부존사료자원의 개발이용
- 벚꽃수거기 보급 및 벚꽃의 암모니아처리지원

#### (5) 한국형 시범축산단지 및 관광목장조성

### 나. '94사료수급계획

#### 배합사료 생산계획

구 分	생산량	%	비 고
축 우 용	천톤 4,967	36.9	
한육우용	2,860	21.3	
낙 농 용	2,107	15.6	
양 든 용	4,543	33.8	
양 계 용	3,480	25.9	
산 란 계	2,080	15.5	
육 계	1,400	10.4	

기 타 용	460	3.4	
기타가축	361	2.7	
양 어 용	99	0.7	
계	13,450	100.0	

## 기축위생과 소관

### 1. 축산물 위생

#### 〈기본방침〉

-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
- 축산물 검사원 교육
- 축산물 작업장위생관리 강화
- 위생도계육 유통정책
- 원유위생관리 강화
- 원유검사장비 지원
- 축산공해 방지시설
- 축산물 위생용기 관리개선
- 원유중 세균수 및 채세포수 측증기기 검증추진
- 시도의 국비수의직 공무원 인건비 배정

#### 가.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

##### (1)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

###### (가) 목적

-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보건향상 도모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정착으로 양축농가 소득보호
  -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・추진
  -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
- (나) 추진방향
  - 축산물내 항균제・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강화
    - 동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시 잔류방지 계도 및 규제강화 병행 등 특별관리 실시
    -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 등 검사기반 구축 지원
    - (다) 추진 계획
      - 실시기관: 시・도 가축위생시험소(서울시,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, 제주도는 축산진흥원)
      - 사업기간: '94. 1~12월
      - 사업량: 45,000건

및 규제강화 병행 등 특별관리 실시  
 ◦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 등 검사기반 구축 지원

###### (다) 추진 계획

- 실시기관: 시・도 가축위생시험소(서울시,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, 제주도는 축산진흥원)
- 사업기간: '94. 1~12월
- 사업량: 45,000건

소	돼지	닭	계	비 고
11,000건	23,000	11,000	45,000	

###### ◦ 검사대상

- 대상품목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
- 대상물질: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(설파제) 등 유해잔류물질

###### ◦ 검사방법

◦ 축산물작업장에서 채취된 수축의 근육사료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여부 판정(스크리닝 검사: EEC4-plate method 적용실시)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(보건사회부 고시)중 “식육중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축산식품중 잔류물질 시험법”에 의거 정량분석 등 검사실시

###### ◦ 검사결과 조치

◦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시 해당가축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계도 및 규제검사 강화 등 특별관리, 허용기준 초과육에 대한 폐기처분 등 제재조치

-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(1차검사)결과 잔류(양성)판정시: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에 의한 특별관리 실시→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농가계도 및 가축 재출하시 2차검사(규제검사) 실시

- 2차검사: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실시(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류 등 유통 제한)

◦ 잔류검사 결과를 분석,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・추진

###### ◦ 사업비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비고
		국비	지방비	계	
유해잔류 물질검사 -검사재료비	건 45,000	천원 40,500	45,000	85,500	국비예산증 축산물내 잔류물질 검사 기술교육 실시 예산 3,000천원 포함
(47%)	(53%)	(100%)			

## (2)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 공동조사사업

### (가) 목적

-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축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보호
- 축산식품에 잔류가능한 동물약품,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잔류물질별 최대 잔류 허용한계치 설정으로 사용구제 및 감시강화 등 잔류방지대책 수립

### (나) 추진방향

-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모니터링

—농림수산부 : 잔류물질 조사결과 평가 및 잔류방지대책 수립

—국립동물검역소 : 수출입 축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결과 보고

—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: 잔류물질 조사(모니터링)계획 수립, 정밀조사 및 결과 종합보고

—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 : 국내산 축산물중 항균물질 1차 스크리닝, 설파체검사 및 2차 정밀조사표 발송

◦ 유해잔류물질 최대 잔류허용한계치 설정 및 규제검사 강화

—허용한계 위반에 따른 원인조사 및 지도·홍보

—동물약품 등 잔류가능한 화학물질 사용규제 및 검사강화

### (다) 추진계획

◦ 실시기관 : 국립동물검역소,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,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

◦ 사업기간 : '94. 1 ~ '94.12월

## 나.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

### (1) 목적

- 축산물의 위생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
- 작업장의 위생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물 수급 원활 및 환경위생 기여

### (2) 추진계획

(가) 축산물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 점검

◦ 대상업소 : 도축장, 도계장, 집유장

◦ 점검 └ 농림수산부 : 년1회 이상  
└ 시·도 : 년2회 이상

◦ 점검 착안 사항

—허가내용 및 시설기준(지속 및 내장검사대 설비 중점)

—작업장내 위생관리 상태

—도살·해체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

◦ 점검결과 조치 : 시·도지사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점검 결과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

(나)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의한 통폐합 대상 도축장의 중점 지도 관리

(다) “축산물작업장허가관리지침(위생 15575-712호, '93. 7.14)”에 의거 도축장, 도계장의 허가관리 철저

(라)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

◦ '94년말까지 작업장별 시설기준에 의한 적정 시설 설비

◦ 수축 및 축산물검사기준에 의한 검사 철저 이행

(마) 도축부산물 처리시설 자금지원

◦ 사업주체 : 시·도지사

◦ 지원대상 :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털, 지방, 내장내용물 등을 원료로 하여 사료 또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축장 경영자

◦ 대상자 선정 및 관리

—시·도지사의 추천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

—자금관리 :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

◦ 사업기간 : '94. 3~'94.12

◦ 지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물량	지원 단가	개소당 사업비	재 월 별 용자		
				계	축발기금	자담 비율
도축부산물처리시설	개소	7	300	430	3,010	2,100 910 70%

◦ 용자조건 : 3년거치 7년 균분상환, 연리 5%

◦ 세부 실시요령

- 시·도지사가 '94.3월말까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

- 사업 대상자 추천시 별첨 서류

- 사업계획서(자체 자금 투자내역 포함)
- 시·도지사 검토 의견서
- 도축장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
- 최근 2년간 월별 도축 실적
- 도축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

◦ 기타

-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천 서식은 추가 시달

-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대상자 확정시 시달

## 다. 위생도계육 유통정책

### (1) 목적

◦ 도계장시설 현대화로 위생도계육 공급 및 닦고기 유통구조 개선

◦ 도계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모, 내장 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공해 방지 및 부산물의 자원화 활용

### (2) 기본방침

(가) 위생 도계육 유통지역 확대지정

◦ 닦,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대상 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

(농림수산부 고시 제90-10호, '90. 3.12)에 의거 유통지역 확대 추진

- 닦 : 전국 읍면위이상 지역을 유통지역으로 고시

- 오리 : 시·도지사의 의견을 검토, 유통지역 고시 확대

(나)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

◦ 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계장에 한하여 타시도 냉장(동) 반출 허용

◦ 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

◦ 반출시 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

(다) 영세·노후한 도계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로 도계 경영 활성화

(라) 주간도계 및 자가도계체제 전환으로 검사업무 강화

(마) 도계장 경영 및 도계육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지원

### (3) 자금지원계획

(가) 사업주체 : 시·도지사

(나) 지원대상 : 도계시설(가공, 비축시설 포함) 개선 및 도계부산물처리설비를 하고자 하는 도계장 경영자

(다) 대상자 선정 및 관리

◦ 시·도지사의 추천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

◦ 자금관리 :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

(라) 사업기간 : '94.3~'94.12

(마) 지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물량	지원 단가	개소당 사업비	재 월 별 용자		
				계	축발기금	자담 비율
도계장시설현대화	개소	5	700	1,000	5,000	3,500 1,500 70%
노계도계처리시설	1	1,400	2,000	2,000	1,400	600 70%
도계부산물처리시설						
- 개별 시설	3	300	430	1,290	900	390 70%
- 공동 시설	1	1,400	2,000	2,000	1,400	600 70%
계	10			10,290	7,200	3,090

◦ 용자조건 : 3년거치 7년 균분상환, 연리 5%

### (4) 세부 실시요령

(가) 시·도지사가 '94.3월말까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

(나) 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 서류

◦ 사업계획서(자체 자금 투자내역 포함)

- 시·도지사 검토 의견서
- 도계장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
- 최근 2년간 월별 도계 실적(자가, 위탁 구분)
- 도계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(부산물처리시설 해당자에 한함)

(다) 기타

-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천 서식은 추후 시달
-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대상자 확정시 시달

## 라. 축산공해 방지시설

### (1) 사업의 목적

-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
  - 양축농가 및 축산단체에 대한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모

### (2) 사업의 내용 및 지원조건

- 사업내용
  - 〈농가 개별사업〉
    - (간이)정화시설 : 저장액비화, 퇴비사, 텁밥발효돈(우)사, 텁밥토양 여과상, KDST 정화조 등
    - 비료화시설 : 통풍식, 교반식, 건조식 분뇨발효시설(부산물비료제조시설 포함)
    - 퇴비처리장비 : 고액분리기, 스키드로다, 소형 텁밥제조기, 분뇨건조기 등
  - 〈단체 공동사업〉
    - 축분발효시설 :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제조업 시설 및 장비
    - 분뇨공동저장탱크 : 가축분뇨 공동저장시설 설치비
      - 바퀴카(Vacuum Car), 살포차량, 교반기 등
    - 텁밥제조시설 : 대형텐밥제조기, 포장시설, 건축비 등
    - 정착촌 구조개선 :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(축분발효시설, 공동저장 탱크 등)
- 지원조건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개소당 사업비	자 원 율(%)			재 원	
		용자	보조	자금		
개 별 시 설	간이정화시설 (법규제이하)	4.2	50	50	-	농특, 축발기금
	정화시설 (신고대상)	10	50	50	-	"
	비료화시설①	100	70	-	30	"
	비료화시설②	50	70	-	30	축발기금
	퇴비처리장비	10	100	-	-	농특회계
공 동 시 설	충분발효시설	1,000	20	50	30	농특, 축발기금
	분뇨운반장비	30	20	50	30	농특회계
	톱밥제조시설	300	70	-	30	농특, 축발기금
	분뇨공동저장탱크	50	20	50	30	"
	정착촌구조개선	300	-	100	-	농특회계

※ 용자조건 : 3년거치 7년균분상환, 연리 3%

### (3) 사업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

◦ 대상지역 : 전국 일원

◦ 대상자

〈개별시설〉

◦ 비료화시설, 퇴비처리장비 : 신고·허가대상농가

◦ 정화시설 : 신고대상 농가

◦ 간이정화시설 : 법 규제미만

※ 신고대상 : 소사육시설 350~1,200㎡ 미만, 돼지사육시설 250~1,400㎡ 미만, 닭사육시설 500㎡ 이상

◦ 허가대상 : 신고대상 이상

◦ 규제미만 : 신고대상 미만중 소11두 이상, 돼지51두 이상 사육농가

〈단체공동시설〉

◦ 지역축협, 축산단지, 계열주체, 영농조합 법인 등 협업체조, 정착촌(단, 텁밥제조 시설은 산림조합이 포함됨)

## 2. 가축방역사업

### 가. 가축혈청검사 사업

#### (1) 목적 및 필요성

◦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,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

◦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시기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

#### (2) 사업시행기관

◦ 가축위생연구소 : 진단액 등 생산 및 기술지도  
◦ 가축위생시험소 : 혈청검사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

#### (3) 검사대상질병 : 19종

◦ 닭 : 뉴캣슬병(ND) · 산란저하증(EDS'76) 감보로병(IBD) · 전염성기관지염(IB) · 추백리(SP) · 마이코포라즈마병(MG) · 닭 뇌척수염(AE)(7종)

#### (4) 실시방법

##### ① 닭 혈청검사

◦ 검사대상선정  
— 중계장에서 직접채혈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.

◦ 가검률제취 : 판내 양계농가에서 검사요청시 진단액 부족으로 인한 검사거부사례가 없도록 매월 균분 실시

## 2. 양축자금 지원

### 가. 사업의 목적

◦ 양축가에게 저리의 양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양축가의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

### 나. 사업내용과 지원조건

#### (1) 자금의 용도

◦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,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단기지원

#### (2) 지원조건

◦ 지원대상 :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양축농가

◦ 호당 지원한도 : 800만원 이내

◦ 대출기간

—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함

—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

◦ 금리 및 이자징수

— 금리 : 년 5%

— 이자징수 : 원금상환일에 후취

### 다. 지원절차

#### (1) 일반양축자금

◦ 지원대상자 추천

— 양축자금을 응자받고자 하는 양축가는 응자추천신청서를 작성, 관할축산계장(또는 축협조합 대의원)에게 신청

— 축산계장은 축협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배정의 범위안에서 양축가별 양축규모와 자금사정, 그동안의 양축자금지원 여부 등을 감안 「응자협의회」에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하고 양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출조합에 제출

— 「응자협의회」는 축협조합장이 각 구역별로 위촉하는 축산계장(또는 대의원), 읍·면·동의 축산담당공무원 1명, 축산 후계자 대표 1명, 일반양축가 대표 2명으로 구성

— 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역은 축협조합대의원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구별로 위요령에 의거 대의원이 추천

◦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개

— 축협조합장은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이 「응자협의회」를 거쳐 추천한 자중에서 대출

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제시판 등에 공개하고 추천자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.

◦ 대출금의 지급

— 대출금은 출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

하지 못하며,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.

— 양축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방지하고, 현금 소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하고, 자금 필요시 인출 사용토록 장려

—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용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.

○ 지원계획 등 홍보

—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양축자금 배정액, 지원기준,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계획을 관내 시·군·구·읍·면·동사무 등에 통보하고 이를 양축농가에게 홍보하여야 함.

(2) 특수목적 양축자금(50억원)

○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축사양비,

시설복구비, 자축 구입비 등에 지원하되 사유 미발생시는 축협중앙회장이 일반양축자금으로 전용지원할 수 있음

○ 지원기준은 별도 시달하는 요령에 의함

라. '94 지원규모(조달 및 운용규모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93(A)	'94(B)	증감(B-A)
조 재 정 자 금	800	1,208	408
한 은 차 입 금	1,040	832	△208
달 축 협 자 금	1,560	1,960	400
계	3,400	4,000	600
운 일 반 양 축 자 금	3,350	3,950	600
용 특 수 양 축 자 금	50	50	—

85 폐

대 탄 생  
양계인을 위한 닌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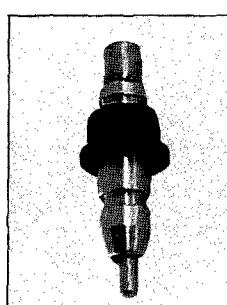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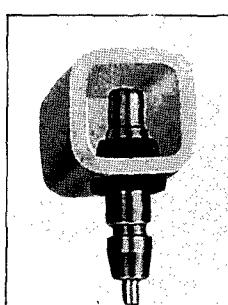
## 닌플생산전문업체

아직도 수입품 닌플만을 고집하십니까?  
金道의 닌플을 사용해 보십시오.

최신형 장비로 대량생산 공급하므로  
가격과 품질면에서 자신있게  
권해 드립니다.

※ 양돈용 닌플도 생산  
기타 장비도 주문시 시공해 드립니다.

### 전화상담환영



# 金道精密

서울·구로구 고척동 103-42번지  
고척공구상가 가-B열 321호  
☎ (02)682-7563 (야) (02)688-9353